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1998. 10. 19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8. 10.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98. 10.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가. 제안이유

-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만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대성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기능(안 제3조)

-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 실행
- 국내 만화인들간의 상호 교류 촉진
- 만화지망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
-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산업 추진시 사업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만화산업추진상황 보고자료에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은 있다고 보며 정확한 수치분석은 앞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지나친 낙관보다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한 바 있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 53 호
의결년월일	98. 10. 28 (제65회)

제출년월일 : 1998. 10. 1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만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대성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기능(안 제3조)

-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 실행
- 국내 만화인들간의 상호 교류 촉진
- 만화지방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
-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운영요원(안 제4조 내지 제8조)

- 소장(1인) : 시장이 임명,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 연임 가능
- 사무국장(1인) : 시장이 채용, 실비 지급, 임기 2년, 연임 가능
- 보조원(2인 이내) : 시장이 채용, 실비 지급, 공무원 파견 가능

다. 자원봉사요원(안 제11조)

○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이하 "만화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만화정보센터는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 13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만화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2.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 실행
3. 국내 만화인들간의 상호 교류 촉진
4. 만화지망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
5.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소장) ①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장 1인을 두되 만화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장 및 보조원)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장의 채용) 사무국장은 만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자로 하여 시장이 채용하며 결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7조(보조원의 채용) ① 보조원은 관내 거주자 또는 만화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시장이 채용하되 결정방법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소속공무원을 보조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사무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시장에 연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사무국장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해임) 시장은 소장, 사무국장 및 보조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채용목적이 소멸된 때

제11조(자원봉사요원)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 등 보고) 소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시장은 만화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 비치, 열람, 이용규칙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